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고용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지원 사유에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되어 특별지원이 필요하게 된 경우’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133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 고용위기사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지원 방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유형별(휴업, 휴직)로 지원 요건 및 절차를 달리하여 운영하였던 것을 완화된 요건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복잡한 절차를 개선하고 제도의 활용 및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지원 대상 추가 및 구체적 판단 기준에 관한
고시 위임 근거 마련(안 제18조제2항)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지원 요건이 특정 업종·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 전국적 고용위기 발생시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대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하였고, 이

에 시행령에 규정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지원 대상에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주’를 추가하고,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은 경제상황에 따라 탄력적 대응을 위해 고시로 위임한다. **유급 고용유지조치 지원유형의 일원화(안 제19조제1항)**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지원 유형이 휴업과 휴직 구분을 전제로 각각 지원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현장 혼란을 초래하고 제도를 활용하는 데 애로가 있어, 지원요건을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의 20% 단축’ 형태로 완화하여 일원화함으로써 기업의 제도 활용을 제고하는 동시에 기업상황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의 인력 운영의 탄력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함

다. 무급 고용유지조치 지원유형의 일원화(안 제21조의3제1항)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없거나 평균임금의 50% 미만으로 매우 낮은 경우 정부가 근로자를 직접 지원해주는 무급 고용유지조치의 지원 유형이 휴업과 휴직 구분을 전제로 각각 지원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현장 혼란을 초래하고 제도를 활용하는 데 애로가 있어, 지원요건을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유리한 무급휴업 기준으로 일원화함

라. 지원유형 일원화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9조제4항 등)

휴업, 휴직을 구분하는 문구를 삭제하거나 통일된 지원유형 기준으로

정비하고, 지원유형 일원화에 따른 혼돈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효기간이
경과한 한시조항을 삭제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이하 이 조에서 “지정업종”이라 한다)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주

나. 가목에 따른 사업주로부터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도급을 받아 제조·수리 등을 하는 사업주로서 매출액의 2분의 1 이상이 그 지정업종과 관련된 사업의 사업주

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에 위치하는 사업의 사업주

제18조제2항제2호의 “제1호에 따른 사업주로부터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도급을 받아 제조·수리 등을 하는 사업주로서 매출액의 2분의 1

이상이 그 지정업종과 관련된 사업의 사업주”를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에서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는 삭제한다.

제18조제3항의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를 ”고용정책심의회“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역(曆)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말한다)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금품을 지급하는 조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시간 또는 휴직기간”을 “근로시간”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또는 휴직 등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이”를 “고용유지조치로 단축된 근로시간의 합계가”로, “근로시간 또는 휴직기간”을 “근로시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또는 휴직 등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이”를 “고용유지조치로 단축된 근로시간의 합계가”로, “근로시간 또는 휴직기간”을 “근로시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일수(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동시에 실시한 날은 1일로 본다)”를 “일수”로, “각각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를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고용유지조치별 대상 근로자”를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로 한다.

제21조의2의 제목 “(휴업 등에 따른 임금감소 수준)”을 “(피보험자 지원이 필요한 금품감소 수준)”으로 한다.

제21조의3의 제목 “(휴업 등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요건 등)”을 “(피보험자 지원을 위한 지원요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시한 휴업 또는 휴직(이하 “휴업등”이라 한다)이 다음”을 “다음”으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구분에 따른 피보험자 수에 대하여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급하는 조치(이하 “무급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하는”으로, “지원금”을 “지원금(이하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을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원금은 휴업등 대상”을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으로 한다.

1. 전체 피보험자 수가 19명 이하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50 이상
2. 전체 피보험자 수가 20명 이상 99명 이하인 경우: 피보험자 10명 이상
3.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10 이상

4.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 피보험자 100명 이상
제21조의3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를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의”로, “휴업등의”를 “무급 고용유지조치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원금을 지급하는”을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으로, “지원금을 받는”을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까지에서”를 “제4항까지에서”로 하고, “휴업등에 따른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금의”를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조정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4조(피보험자 지원을 위한 지원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고용조정의 지원 내용 등) ① (생략)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u>우선적으로</u>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이하 이 조에서 “지정업종”이라 한다)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주 <u><신설></u>	제18조(고용조정의 지원 내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u> ----- ----- ----- 1.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u>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이하 이 조에서 “지정업종”이라 한다)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주</u> <u>나. 가목에 따른 사업주로부터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도급을 받아 제조·수리 등을 하는 사업주로서 매출액의 2분의 1 이상이 그 지정업종과 관련</u>

<신 설>

2. 제1호에 따른 사업주로부터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도급을 받아 제조·수리 등을 하는 사업주로서 매출액의 2분의 1 이상이 그 지정업종과 관련된 사업의 사업주

3.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에 위치하는 사업의 사업주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또는 전직

된 사업의 사업주

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에 위치하는 사업의 사업주

2.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에서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주.

<삭 제>

③ -----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의 요건과 지원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9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피보험자[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사람,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사람 및 사업주(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1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 제22조의2, 제35조제8호 및 제37조의3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

-----고용정책
심의회-----

-----.

제19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① -----

----- 역(曆)에 따른 1개월의 소
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에

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에 지원금(이하 “고용유지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근로자를 조(組)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편 또는 휴업 등을 통하여 역(曆)에 따른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이 경우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 등 근로시간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말한다)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금품을 지급하는 조치-----

---.

<삭 제>

<삭 제>

②·③ (생략)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을 받은 사업주(이하 이 항에서 “수급사업주”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 또는 도급을 주는 사업주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그 단축된 근로시간 또는 휴직기간을 산정하여 파견사업주 또는 수급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1. 2. (생략)

⑤ (생략)

제21조(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등) ① 고용유지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에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4분의 3 이상 10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근로시간-----

--.

1. 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등) ① -----

-. -----

분의 9 이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하 “대규모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또는 휴직 등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이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 또는 휴직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또는 휴직 등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이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 또는 휴직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지원

-----.

1. 고용유지조치로 단축된 근로시간의 합계가 -----

----- 근로시간 -----

 2. 고용유지조치로 단축된 근로시간의 합계가 -----

----- 근로시간 -----

- ② -----

금은 그 조치를 실시한 일수(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동시에 실시한 날은 1일로 본다)의 합계가 그 보험연도의 기간 중에 180일에 이를 때까지만 각각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보험연도의 경우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일수의 합계가 240일에 이를 때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④ 삭 제

⑤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별 대상 근로자 1명당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의2(휴업 등에 따른 임금감소 수준) (생략)

제21조의3(휴업 등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요건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가 있음에도 고용조

----- 일수-----

----- 고용유지지원
금을 지급한다.

<삭 제>

⑤ -----
----- 고용유지조치 대
상 피보험자 -----

-----.

제21조의2(피보험자 지원이 필요한
금품감소 수준) (현행과 같음)

제21조의3(피보험자 지원을 위한
지원요건 등) ① -----

정을 하는 대신에 실시한 휴업
또는 휴직(이하 “휴업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피보
험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피
보험자 수에 대하여 30일 이
상 휴업을 실시하고, 그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휴업수당을 지급
하지 아니하거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액수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가. 전체 피보험자 수가 19명

----- 다음 -----

----- 구분에 따른
피보험자 수에 대하여 1개월 이
상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 제46조제2
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하거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급하
는 조치(이하 “무급 고용유지조
치”라 한다)를 하는 ----- 지
원금(이하 “무급 고용유지지원
금”이라 한다)-----.

1. 전체 피보험자 수가 19명 이
하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
의 100분의 50 이상

이하인 경우: 전체 피보험
자 수의 100분의 50 이상

나. 전체 피보험자 수가 20명
이상 99명 이하인 경우: 피
보험자 10명 이상

다.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0
명 이상 999명 이하인 경
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
0분의 10 이상

라.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00
명 이상인 경우: 피보험자
100명 이상

2.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 또는 피보
험자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
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고용
유지조치를 3개월 이상 실시
한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
른 피보험자 수에 대하여 30
일 이상 휴직을 실시하고, 그
기간 동안 근로자대표(근로자
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
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

2. 전체 피보험자 수가 20명 이
상 99명 이하인 경우: 피보험
자 10명 이상

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
다)와의 합의에 따라 휴직수
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 전체 피보험자 수가 99명
이하인 경우: 피보험자 10
명 이상

나.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0
명 이상 99명 이하인 경
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
0분의 10 이상

다.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00
명 이상인 경우: 피보험자
100명 이상

3.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 또는 피보
험자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
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고용
유지조치를 3개월 이상 실시
한 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
두 갖춘 경우(피보험자가 10
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피보험

3.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0명 이
상 99명 이하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10 이
상

자에 대하여 30일 이상 휴직을 실시하고, 그 기간 동안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나. 해당 보험연도의 기간 중에 제21조제2항에 따라 18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피보험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 또는 수당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은 휴업등 대상 피보험자 1명당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4.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 피보험자 100명 이상

②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은-----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기간은 해당 휴업등의 기간 동안 피보험자 1명당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피보험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는 피보험자의 직업능력 개발 ·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안정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2021년 6월 30일까지는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그 지원의 요건과 수준을 고시로 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시로 정하여 지원하는 기간은 6개월

③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의-----
----- 무급 고용유지조치의-----
-----.

④ -----
----- 무급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
----- 무급 고용
유지지원금을 받는-----

-----.

<삭 제>

<u>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 ⑥ 제1항부터 <u>제5항까지에서</u> 규정한 사항 외에 <u>휴업등에 따른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금의</u>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기간, 신청 방법 ·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u>제4항까지에서</u>----- -----<u>무급 고용유지 지원금의</u>----- ----- -----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연 락 처	(044) 202 - 7229